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보완

공화주의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홍성구

숙의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적 숙의만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이론체계이다. 숙의민주주의가 현재 당면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치참여의 협애화라는 외부적 비판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숙의민주주의 내부에서 '평등하고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확대'와 '공정한 합의 도출'이라는 두 지향점 간의 조화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하버마스와 롤즈를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체계의 특성과 한계를 고찰한 후, 대안적 논의로서 고전적 공화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논거를 통해 이 연구는 공화주의가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보완적 요소를 지니며, 숙의민주주의가 당면한 두 가지 과제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는지 제시하고자 했다.

국문 키워드: 숙의민주주의, 공화주의, 공적 이성, 공론장, 비지배

영문 키워드: deliberative democracy, republicanism, public reason, public sphere, non-domination

1. 서론: 문제제기

1990년대, 민주주의 이론의 숙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지향성에 대한 폭넓은 논쟁을 이끌어냈다(Dryzek, 2000, p. 1). 민주주의 이론의 숙의적 전환을 주도한 숙의민주주의의 핵심 주장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선호의 집산적(*aggregative*)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공적 숙의를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숙의민주주의는 공적 숙의라는 새로운 의사소통적 질서를 창출하고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의사소통적 재해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짧은 연원에도 불구하고 전지구화로 인한 사회 내부의 다양성 심화를 비롯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숙의민주주의의 실천을 둘러싸고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론적 패러다임 내부에서도 서로 좁히기 힘든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숙의민주주의가 정치참여를 협애화(狹隘化)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참여의 협애화 가능성은 정치참여를 절차적 논증 아래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숙의민주주의의 고유한 이론적 특징 때문이다.¹⁾ 숙의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숙의는 단순한 정치적 대화나 토론이라기보다는 절차적 의미에서의 불편부당한 논증을 가리킨다. 여기서 불편부당하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정당한지 결정하기 이전에 모든 관점에서부터 생각하며, 모든 관점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버마스(J. Habermas)의 의사소통적 이성, 롤즈(J. Rawls)의 원초적 입장은 모두 불편부당한 논증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에 관한 정교한 이론적 틀이다(Held, 2006/2010, p. 453). 숙의민주주의는 감정적 요소나 개인의 자

1) 정치참여의 협애화 가능성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될 수 있다. 인터넷 공론장은 합리적 대화나 토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감정적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경험적 분석의 공통된 진단이다(윤영철, 2000; 김은미·이준웅, 2006; 김종길, 2005; 김현석·이준웅, 2007; 이동훈, 2009).

연적·사회적 조건 등 우연적 요인들을 배제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제약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정치현상의 복잡한 양태들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협대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둘째는 숙의민주주의 내부에서 ‘평등하고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확대’와 ‘공정한 합의 도출’이라는 두 목표 중에서 무엇을 우위에 놓을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숙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시민들이 직접 강제력을 지닌 민주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을 직접민주주의의 주체로 상정할 경우 시민들에게 과도한 정치참여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개인이나 집단들의 선호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여과 없이 투입될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등하고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확대’와 ‘공정한 합의’를 바탕으로 강제적 규범을 제정하는 제도화된 공적 숙의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²⁾

이 연구에서 숙의민주주의의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적 논의로 상정한 것은 고전적 공화주의이다.³⁾ 공화주의는 숙의를 극히 추상적인 논쟁 규칙에 따른 획득 불가능한 조건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이지 못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숙의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

2) 전자를 투입중심의 민주주의, 후자를 산출중심의 민주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투입중심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평등한 참여를 지향하는 반면, 산출중심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인 법률이나 정책의 공정성에 치중한다. 동질적인 소규모 정치공동체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경우, 평등한 정치참여와 공정한 합의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에서 이와 같은 민주주의 기획은 실현되기 어렵다. 연구자가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은 현실의 민주주의에서 양자의 완벽한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숙의민주주의가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지만 무게중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공화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정점으로 하는 시민적 인본주의와 마키아벨리를 정점으로 하는 고전적 공화주의 등 두 가지 전통에서 논의되어왔으나, 최근에는 고전적 공화주의가 공화주의를 대표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곽준혁, 2009). 이 논문에서 별도로 없이 ‘공화주의’라고 쓴 것은 고전적 공화주의를 가리킨다. 시민적 인본주의는 공동체주의로 표기했다.

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⁴⁾ 공화주의가 공적 숙의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비지배(*non-domination*)이다. 타인의 자의적 지배의 부재를 의미하는 비지배는 공화주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동시에 공적 숙의의 조건이다. 공화주의는 공적 숙의의 주체인 시민들을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자의적 권력에 예속된 존재로 파악한다. 공적 숙의가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시민들은 자의적 권력행사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시민들 간에는 서로 존중하는 시민적 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적 숙의에 대한 공화주의 입장은 숙의민주주의에서 배제했던 시민적 덕성과 공동선 등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들을 자유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하여 공적 숙의를 실천하는 데 적용하자는 것이다.⁵⁾

이 논문에서는 하버마스와 롤즈를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 이론체계의 특성과 한계를 고찰한 후 숙의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한 대안적 논의로서 공화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숙의민주주의 이론체계의 특성과 한계는 ‘공적 숙의의 개방성’, ‘공적 숙의에 부과되는 의사소통상의 제약성’, ‘공적 숙의의 주제’ 등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공화주의 비판과 대안 제시는 ‘비지배’, ‘공론장의 의사소통 양식’, ‘민주적 의사결정의 정당화 수준’ 등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이와 같은 논거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공화주의가 숙의민주주의의 취약한 부분인 정치참여의 협애화와 여론과 제도화된 숙의의 조화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는지 제시하고자 했다.

4) 이와 같은 주장은 숙의민주주의 내부에서도 제기된다(Gutmann & Thompson, 1996, p. 200 참조).

5) 하버마스와 롤즈가 배제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시민적 인본주의의 시민적 덕성과 공동선이다. 그 이유는 시민적 인본주의의 시민적 덕성이 정치참여를 의무로 규정하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와 양립하기 어렵고, 공동선이 특정한 가치에 근거할 경우 공정한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특성과 한계

숙의민주주의의 연원은 멀게는 아테네의 민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성적 논증절차에 의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논리체계는 칸트적 규범이론으로부터 나왔다. 하버마스와 롤즈의 이론체계는 전통이나 관습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보편주의적 원리 정립과 이를 중심으로 한 현실 비판의 측면에서 모두 칸트주의적 규범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유홍림, 1994, 480~481쪽). 197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보면, 숙의민주주의는 좋음(*good*)에 대해 옳음(*right*)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전통 속에 있다. 공적 숙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공유하는 가치나 시민적 덕성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이 지닌 보편적 합리성이다.⁶⁾ 그러나 숙의민주주의는 하버마스를 정점으로 급진적 민주주의 기획으로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와 롤즈를 정점으로 의사결정의 차원에서 공적 숙의에 집중하는 민주적 숙의(*democratic deliberation*)라는 두 전통으로 뚜렷하게 나뉜다(Chamber, 2009).⁷⁾

6) 옳음과 좋음의 논쟁은 윤리학에서 도덕성과 인륜성 논쟁을 의미한다. 도덕성은 이상적인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규범들의 근거를 제시하고 일반화하려는 이론적 태도를 말한다. 반면 인륜성은 행위와 삶에 관련된 조건들을 모두 실천철학의 체계 내에 반영하고 포함시킴으로써 행위 규범들의 구체적인 현실성을 중시하는 이론적 태도를 가리킨다(김미영, 2006). 하버마스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나뉜 정치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유주의적인 이론적 지향성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김비환, 2004, 71쪽).

7)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대부분 하버마스와 롤즈 두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Dryzek, 2000).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이론 이후 《사실성과 타당성》(1992)을 통해 체계적으로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숙의민주주의는 하버마스가 의사소통 행위이론 이후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실천력의 확보를 위해 의사소통의 사회이론을 정치이론의 차원에서 재편하는 이론적 단계이다. 롤즈는 《사회정의론》(1972) 출간 이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 결과를 반영한 《정치적 자유주의》(1993)를 출간한다. 이후 《만민법》(1999)에서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공적 이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참고적으로 숙의민주주의를 범주화하는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규호(2005)는 숙의민주주의를 방법론적 측면에서 ‘규범적 숙의민주주의’(Rawls, Gutmann & Thompson, Cohen), ‘절차적 숙의민주주의’(Habermas, Benbib, Bohman), 성찰적 숙의민주주의자

1) 하버마스

하버마스는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된 숙의와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공적 의견 사이의 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의사소통 전제의 제도화’라고 규정한다(Habermas, 1992/2007, p. 400). 하버마스 이론체계의 독특성은 제도화된 공적 숙의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형성 과정에 주목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숙의민주주의 이론체계의 중심에 공론장을 위치시킨다. 공론장은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각하고, 설득력 있게 주제화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의회와 같은 제도화된 숙의 기구가 이것을 수용·처리하게 한다(Habermas, 1992/2007, p. 478). 공론장에서 시민들은 결정의 부담을 지지 않은 채 공적 의견과 공적 의지를 생성한다(Habermas, 1992/2007, p. 480). 즉, 공론장을 통해 공적 숙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법률안 확정, 정책 수립 등 최종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최종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의회와 같이 제도화된 숙의 기구가 담당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야생의 복잡체’, ‘무정부적 구조’, ‘계약 없는 의사소통의 매체’ 등과 같은 은유를 사용하는데, 이것들은 공론장이 어떠한 절차나 계약에 구속되지 않음을 나타낸다(Habermas, 1992/2007, pp. 413~414). 이러한 공론장은 사회적 권력이나 구조적 폭력,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의 억압적 영향과 배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새로운 문제들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집합적 정체성과 욕구의 해석들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Habermas, 1992/2007, pp. 413~414).

그렇다면 공론장은 어떻게 해방의 잠재력을 산출할 수 있을까? 하버마스는 숙의민주주의에서도 의사소통적 이성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상적 담화상황⁸⁾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는다(Habermas,

(Young, Dryzek) 등으로 분류했다. 반면, 장동진·송경호(2006)는 숙의의 주체를 중심으로 선출된 대표자(Rawls), 위원회(Gutmann & Thompson), 시민사회(Habermas, Boman, Dryzek) 등으로 분류했다. 롤즈와 하버마스 중심의 분류는 Dryzek(2000), 홍성구(2002), Rostbøl(2008)을 참조할 것.

1992/2007, pp. 32~33). 하버마스는 현실사회를 전략적 행위(혹은 성공 지향적 행위)와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가 양극화된 상태로 파악한다.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책 제목이 말해 주듯이 전략적 행위는 모든 상황요소들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평가해야 할 하나의 ‘사실’로 존재하며,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는 공통의 상황이해에 의존하여 상호주관적으로 인정된 ‘타당성’ 주장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Habermas, 1992/2007, p. 59). 즉, 공론장의 규범적 원천은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이다.

공론장에서 시민들은 화자와 청자, 배우와 관객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론장이 매스미디어의 수용자 혹은 동시대인 등으로 확장될수록, 시민들은 청자나 관객의 입장에서 어떤 주장이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로서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여론 혹은 공적 의견이 형성되는데, 공적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은 단순히 어떤 의견이 얼마나 폭넓은 지지를 받았느냐에 국한되지 않고, 충실한 제안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정보와 근거들이 합리적으로 가공됐는지 여부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판별된다(Habermas, 1992/2007, p. 481).

공론장에서 공적 숙의가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를 통해 여론과 공적 의지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하버마스의 이론체제는 절차성을 가정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공적 숙의의 엄격한 이

-
- 8)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이성론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상적 대화상황을 통해 구체화된다. ① 모든 잠재적인 담론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적 언어행위를 사용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참여자들은 언제나 담론(대화)을 시작하고, 주장과 반박을 통해 물음과 답변을 지속할 수 있다. ② 모든 담론 참여자들은 해석, 주장, 권고, 해명 그리고 정당화를 개선하고, 이것들의 타당성 요구를 문제 삼아 근거를 제시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 결과 어떤 선입견도 주제화와 비판으로부터 영구히 벗어날 수 없다. ③ 행위자로서 표현적 언어행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즉 자신의 입장, 감정, 소원을 표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진 화자만이 담론에의 참여가 허락된다. ④ 행위자로서 규제적 언어행위를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다시 말해 명령하고, 반항하고, 허락하고, 금지하고, 약속하고, 약속하도록 만들고, 변명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진 언어행위자만이 담론에의 참여가 허락된다(Reese-Schäfer, 1991/1998, pp. 32~33).

상적 절차를 공론장 전체로 확장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코헨(J. Cohen)에 대한 비판이다. 코헨은 마치 롤즈와 하버마스를 결합한 것처럼 이상적 절차의 개념을 사회 전체로 확장할 것을 주장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시도가 복잡한 현대사회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이상화된 절차는 의회와 같이 제도화된 숙의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⁹⁾

하버마스가 공적 숙의를 시민사회의 공론장과 제도화된 공론장으로 이원화시켜 설명하는 것은 현실의 민주주의에서 의회와 같은 제도화된 공적 숙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론장에서 합의를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의를 산출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도 뒤따른다. 제도화된 공론장의 역할은 공론장에서 형성된 공적 의견이나 의지에 기초해서 사려 깊고 책임성 있는 공적 숙의를 진행하는 것이다(Nugus, 2009).

하버마스는 시민적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공론장에서 대화와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공론장에서 공적 숙의의 주제가 개방적인 것은 공론장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사적 개

9) 코헨은 공적 숙의의 이상화된 절차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공준에 입각해 설명한다. ① 토의과정은 논증적 형식 속에서, 다시 말해서 제안들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검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보와 근거의 잘 규제된 교환을 통해 일어난다. ② 토의는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다. 원칙적으로 누구도 배제되어선 안 된다.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③ 토의는 외적 강제로부터 자유롭다. 참여자들은 오직 논의의 의사소통적 전제와 절차규칙에 의해서만 구속받으며, 이러한 한에서 주권적이다. ④ 토의는 참여자들의 동등한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적 강제로부터 자유롭다. 각자 발언하고, 주제를 도입하고, 기고하고, 제안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예/아니오'의 입장표명은 오직 더 나은 논지의 강제 없는 강제로부터 나온다. 나머지 조건들은 토의의 정치적 성격의 측면에서 그 절차를 특정화한다. ⑤ 토의는 일반적으로 합리적 동기에서 나온 동의를 목표로 하며, 원칙적으로 무제한 계속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토의는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수결에 의해 종결되어야 한다. ⑥ 정치적 토의는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이익을 위하여 규제될 수 있는 모든 소재들로 확장된다. ⑦ 또한 욕구의 해석과 전정치적 태도와 선호의 변화도 정치적 토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Cohen, 1989, Habermas, 1992/2007, pp. 409~410에서 재인용)

인들이며, 사적 개인들이 공론장을 통해 스스로 발의하고, 토의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이것을 정치적 시민과 사회적 시민의 개인적 통일성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공론장의 담지자인 정치적 시민과 사회적 시민 사이에는 개인적 통일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동자와 소비자, 피보험자와 환자, 납세자와 국가관료제의 서비스 수혜자, 학생, 여행자, 통근자 등의 보충적 역할 속에서 이 역할에 상응하는 행위체계의 특정한 요청과 실패에 의해 특별한 방식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Habermas, 1992/2007, p. 478).

공적 숙의는 공론장에 진입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적 의견과 공적 의지로 집약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정치참여 자체가 공적 숙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숙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공적 숙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진정한 담지자로서 시민사회를 지목한다. 자유의지에 기초하는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연결망과 자발적 결사체로서 시민사회는 생활세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응집시키고, 증폭시키며, 아울러 공론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Habermas, 1992/2007, p. 486).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숙의에서 시민사회의 비중이 커질수록 의사소통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은 줄어든다(Habermas, 1992/2007, p. 496).

공론장에서 의사소통 과정의 왜곡은 매스미디어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하버마스는 언론인을 공중 및 사회운동과 더불어 공론장의 주요 행위자로 분류한다. 언론인은 공론장에 주제, 각종 제안 및 해결책을 제시하고 발언자들이 매스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을 일정 범위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Habermas, 1992/2007, p. 498). 하버마스는 매스미디어가 공론장의 탈정치화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론장에서 정치체계와 시민사회의 세력관계가 역전될 경우 매스미디어는 공중의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Habermas, 1992/2007, p. 502).

하버마스의 이론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의견 형성’이다. 공론장의 다양한 행위자들 중에서 시민사회는 생활세계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증폭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 동시에 시민사회가 스스로 생존하고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상호이해 지향적 의사소통을 지향해야 한다. 무정부적 성격을 지닌 공론장이 상호이해 지향적 의사소통에 근거해서 체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공적 숙의를 주도해야 한다.

2) 롤즈

하버마스가 공적 숙의를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확장하였다면, 롤즈는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공직자와 관료들에게 일임한다. 롤즈의 숙의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공적 이성’이다.¹⁰⁾ 롤즈는 공적 이성이 모든 정치적 토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정치 공개토론(*public political forum*)에 국한된다고 강조한다. 공적 정치 공개토론은 대법원 판사들의 논변, 정부 관료들 특히 수석행정가와 입법가들의 논변, 공직 후보자들과 그들의 캠페인 매니저의 논변 등을 말한다(Rawls, 1999/2000, 211쪽). 공적 정치 공개토론은 배경문화(*background culture*)와 분리되어 있으며, 배경문화에는 민주사회의 고유한 각종 포괄적 교리들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협회들의 문화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포함된다(Rawls, 1993/1998, 16쪽).

10) 롤즈는 공적 이성이 다섯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① 공적 이성이 적용되는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 ② 공적 이성이 적용되는 사람(정부 관료들과 공직 후보자들) ③ 일련의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주어진 공적 이성의 내용 ④ 민주적 시민에 적용되는 정당한 법의 형성에 수용되는 강제적 규범에 관한 토론에서 상기 관점들의 적용 ⑤ 시민들의 정의관들로부터 도출되는 원칙들이 상호성의 기준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Rawls, 1999/2000, 201쪽).

각각 내부적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의 수많은 다양한 기구들과 단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 및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의 틀 내에서 존재한다. 공적 이성의 개념은 많은 형태의 비공적 이성이 존재하는 배경문화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어떤 종류의 대중매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Rawls, 1999/2000, p. 212).

공적 이성은 합리적 대화와 논증을 통해 합의를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 공적 이성은 공정한 합의 수립을 전제로 공적 숙의에 참여하는 시민 대표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배경문화는 공동선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공적 이성이라는 시민성의 의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스미디어도 마찬가지이다. 매스미디어의 활동에 공적 이성을 부과하면,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공적 숙의 과정에서 배경문화를 제외하는 것은 공정한 합의를 저해하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롤즈의 이론 체계에서 배경문화는 시민들이 고유한 선관과 정의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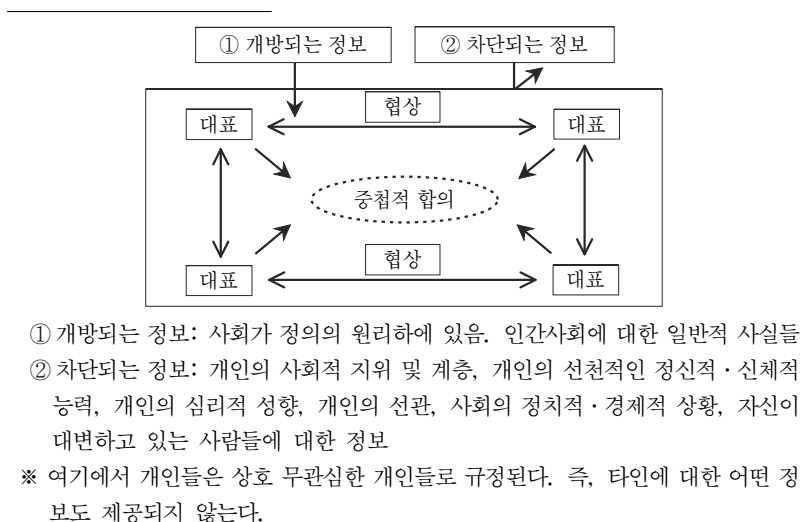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중첩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적 장치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다. 원초적 입장은 배경구조의 특수한 양상과 상황의 영향을 제거하여야만 공정한 계약이 수립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원초적 입장은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이라는 일종의 정보차단 상태를 통해 구체화된다. 롤즈는 공정한 사회 계약을 저해하는 정보를 차단하는 무지의 장막을 통해 계약 당사자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무지의 장막은 공적 이성이 작동하기 위한 가상적 조건이다.¹¹⁾

원초적 입장의 핵심은 포괄적인 교리로부터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롤즈는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각각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특정한 포괄적 교리에 대해서 알 수 없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즉, 원초적 입장은 단순한 대표의

11) 무지의 장막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김만권, 2001, 233쪽).

장치로, 각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본질적 이해관계에 책임을 지는 이해당사자들이 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들이 타당한 이유로서 개진할 수 있는 바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조건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Rawls, 1993/1998, p. 31). 롤즈는 이와 같은 정당화를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시민들이 공통된 인간 이성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들과 이상들에 비추어 보아 지지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헌법적 핵심 사항들에 따라 정치권력들이 행사될 때에만, 우리의 정치권력 행사가 완전히 적합하다”라고 표현한다(Rawls, 1993/1998, p. 137).

원초적 입장은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시민 대표자들이 정의의 문제에 대해 불편부당한 판단을 보증하는 제한 규정에 정확하게 복종하는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공적 숙의의 당사자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했는지 여부는 공적 숙의의 결과가 공정함을 판단하는 핵심적 근거가 된다. 공적 이성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합의가 무지의 배일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합의 결과에 대해 동의한다. 롤즈의 주장은 공적 숙의의 결과가 공정한지 여부를 감시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결과물의 내용이 아니라 결과물이 도출되는 절차에서 원초적 입장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이다.



3) 숙의민주주의의 두 전통 간의 비교 및 이론적 한계

숙의민주주의가 공적 숙의를 절차적으로 규정한 것은 서로 상충하는 여러 가치들이 대립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적 숙의의 내용을 기준으로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는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인다.

첫째, 하버마스의 공론장과 롤즈의 공적 이성을 서로 비교할 때, 공적 숙의의 개방성 정도는 공적 숙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제약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양자의 이론적 전략은 완전히 다르지만, 공적 숙의의 개방성 정도와 의사소통의 제약성을 서로 조율시키고 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숙의를 특정 주제와 제안에 대한 동의로 설명한다. 공적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은 단순히 어떤 의견이 얼마나 폭넓은 지지를 받았느냐에 국한되지 않고, 충실한 제안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정보와 근거들이 합리적으로 가공됐는지 여부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판별된다. 시민들은 대화와 논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혹은 관객이나 청자의 입장에서 어떤 주장이 시민들의 상호이해에 근거한 것인지를 여부에 대한 동의 표명을 통해 공적 의지를 형성한다. 반면 롤즈는 시민 대표들이 공정한 합의를 저해하는 정보가 차단되는 원초적 입장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모든 시민들에게 무지의 장막 하에서 공적 숙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은 공적 숙의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에 동의한다. 모든 시민들이 공적 숙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동의한 공정한 절차 아래에서 형성된 합의는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둘째, 공적 숙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제약은 공적 숙의에서 다루는 주제의 중요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하버마스는 공적 숙의의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어떠한 주제도 선형적으로 중요성을 미리 부여받지 못하며, 공론장에 의해서만이 주제의 중요성이 결정된다. 그러나 롤즈는 공적 숙의의 대상이 헌법의 본질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합의는 잠정적인 것이 아닌 세대를

〈표 1〉 숙의민주주의의 이론 구성의 차이점: 하버마스와 롤즈

구분	하버마스	롤즈
공적 숙의의 주체	일반 시민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
	공적 숙의의 주체는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가정됨 공적 숙의의 능력이 다르지 않음	
의사소통적 제약성	상호이해에 입각한 동의표명	원초적 입장의 가정 수용
공적 숙의의 주제	제한 사항 없음	헌법의 본질과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에 국한
	공적 숙의의 절차는 공적 숙의 대상에서 배제됨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결과라고 주장한다.

공적 숙의에 대한 롤즈의 전략은 한마디로 배제전략이다. 롤즈는 공적 숙의의 문제를 ‘정치적인 근본 문제’로 한정하는 동시에 합의의 방법을 ‘공적 이성’에 한정한다. 롤즈는 공적 숙의를 정치적 정당성을 충족시키는 요건으로만 상정한다. 반면 하버마스의 전략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제들을 공론장에서 여과하여 제도화된 공적 숙의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공적 숙의를 정의와 공공선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인식론적 과정으로 파악한다(김명식, 2004).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롤즈의 전략은 유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에는 취약하다. 첫째 롤즈의 이론체계에서는 무엇이 공적 이성을 작동시키는지 불분명하다. 공적 이성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개헌과 같이 헌정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과 광범위한 여론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적 이성은 배경문화와 차단된 상태에서 작동함으로 이 과정에 대한 해명을 필요로 한다. 둘째,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합의가 정치적 공동체 내부에서 거부될 수 있는 위험이 내재한다. 원초적 입장은 매우 엄격한 정보 차단 상황이므로 합의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예견하기 어렵다.

공적 숙의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민주적 참여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는 하버마스의 전략이 유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에는 취약하다. 첫째, 공론장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발생할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을 제도화된 공적 숙의

나 심지어 투표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둘째, 공론장에서 형성된 여론과 공적 의지를 제도화된 공적 숙의 기구가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면, 하버마스의 전략보다 롤즈의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셋째, 공론장에서 어떠한 의견이 여론이나 공적 의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모국어 사용에 서툰 소수자들의 경우 배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버마스와 롤즈의 이론체계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거의 일치한다. 첫째, 롤즈의 원초적 입장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이성 은 그들 이론체계 내에서의 기능과 목적에 있어 유사성을 보인다. 대표성 확보의 수단으로서 원초적 입장 개념은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난 합리적 관점에서 한 사회 내의 기본구조를 결정하는 근본원리를 구성하고 정당화하는 절차에 있어 핵심 기능을 한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이성은 설득력 있는 논의전개의 동기 이외에 여타 모든 동기들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적 규칙을 수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둘째, 양자 모두 구체적 규범원리들의 정당화에 있어 순수 절차적 시각(*pure procedural*)을 수용한다. 정당한 원리는 일련의 절차적 규칙이 준수되는 과정의 결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와 롤즈는 모두 상황 가변적 이해와 특권이 배제된 논증절차로서 칸트가 말하는 ‘이성의 공적 사용’(*the public use of reason*)에 기초해서 공동체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항한 논리체계를 수립한다(유흥림, 1994, 480~481쪽)

절차적 논증에 입각한 하버마스와 롤즈의 이론체계는 몇 가지 공통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의사소통적 이성과 원초적 입장은 모두 공적 숙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의사소통의 제약인데,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협애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 숙의에서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제외한 의사소통양식들은 배제될 수 있다. 둘째,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일치의 근원일 수 있는 권력의 불평등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공적 숙의의 주체를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가정하지만, 그것은 형식적 가정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경제적으로나 권력적으로 불평등한 조건 속에서 공적 숙의에 참여한다. 셋째,

공적 숙의의 절차가 공적 숙의의 영역에 개방되지 않는다. 숙의민주주의는 공적 숙의 절차가 공적 숙의 내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성격을 갖지만, 정작 공적 숙의 절차를 공적 숙의 영역에 개방하지 않는다. 공적 숙의 절차는 정치의 몫이 아닌 정치 철학의 몫이다.

3.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공화주의의 비판 및 대안제시

1) 공적 숙의에 대한 공화주의의 기본 입장

공화주의의 어원은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유래했다. 레스 푸블리카는 통치가 한두 사람 지배자의 특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적인 일임을 뜻한다(양해림, 2008). 공화주의는 로마 공화정(Roman Republic) 시대의 키케로(Cicero)를 출발점으로 하여, 마키아벨리(Machiavelli)를 비롯한 이탈리아 공화국(Italian republics)의 이론가들, 제임스 헤링턴(James Harrington)을 비롯한 영국내란기의 공화주의 이론가들을 거쳐 형성됐다(Petti, 1997, pp. 5~6).

현대 공화주의를 체계화하는 데 핵심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 페티(Pettit)은 공화주의가 견지하는 이상을 세 가지 형태로 제시한다. 첫째는 비지배적 자유라는 공화주의의 고유 개념이며, 둘째는 로마 공화국의 혼합정체가 보여주듯 사적 지배(private domination)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국가는 반드시 그 힘을 각기 다른 부문으로 분배해야 공적 지배(public domination)를 피할 수 있다는 신념이며, 셋째는 시민들이 통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정체가 손상되지 않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첫째는 자유에 대한 철학적(philosophical) 이상이고, 둘째는 혼합정체라는 헌정적(constitutional) 이상이며, 셋째는 시민적 관여라는 민주적(democratic) 이상이다(Pettit · 광준혁, 2009, 120쪽).

공화주의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서 자유주의와의 공존의 틀을 제공하고,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자의적 지배에 대한 저항을 체화하여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민주적 숙의를 부각시킨다. 특히 페티트는 공

적 숙의를 통해 공동선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숙의를 가능하게 하고, 숙의를 통해 어떤 가치가 선택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원칙은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숙의 이전에 결정되는 것은 거부한다. 이와 같은 입장을 펴뒀은 결과론적 구성주의라고 명명한다(Pettit · 콰준혁, 2009, 105~106쪽). 결과론적 구성주의는 어떤 행위나 제도가 다른 행위나 제도가 같은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양산할 때에만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원칙이다(Dagger, 2008/2010).

페티트가 제시한 결과론적 구성주의는 숙의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숙의민주주의에서 공적 숙의 절차는 숙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공동선 도출이 단일한 절차나 단일한 가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공화주의는 공동선을 수립하는 절차와 주제 모두 공적 숙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권리를 보편적인 윤리적 합의에서 도출한 원칙들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생활 형태들의 조정원리(*co-ordinating principle*)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법률과 권리 그리고 분배적 원리들은 각 사회가 그들의 일을 조정하기 위한 경험적 규칙에 불과하다(김비환, 2004, 91쪽). 공화주의가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게 된 것은 마키아벨리의 영향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항상 잠재적 혼돈과 유동성의 세계로 파악했다. 마키아벨리는 정부가 표방하고 지켜야 할 어떤 주어진 원칙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다. 정치가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정해 주는 어떤 본질적 조건이나 신이 부여한 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계의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정치의 과제이다(Held, 2006/2010, p. 89).

2) 비지배와 숙의민주주의

공화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자의적 권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비지배 상태이다. 현대 공화주의 이론체계의 특징은 비지배 원리를 공화주의의 여타 핵심 개념들 즉, 시민적 덕성, 공동선에도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구성 방법을 통해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와 양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평등하고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페티트는 공화주의가 숙의민주주의의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숙의민주주의의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전략적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숙의민주주의가 사회적 예측 관계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Pettit, 1997, p. 274). 페티트가 제시한 세 가지 항목은 비지배로부터 추론된 것이다. 페티트는 숙의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비지배가 적합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간섭해야 하는 권력이자 제도이지만, 이 같은 권력의 행사는 조세징수, 법률제정 등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공화주의의 비지배는 어떻게 하면 시민적 삶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비자의적으로 행사되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개입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인정하는 공통된 이익을 따를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의 비지배는 숙의민주주의의 목표로서 적합하다는 것이다.¹²⁾

공화주의가 비지배에 집중하자는 주장은 공동선에 대한 합의가 현대 다원주의의 양상들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현대 다원주의의 핵심적 딜레마는 가치의 양립 불가능성과 비교 불가능성이다. 벨라미는 숙의민주주의가 공동선 수립에 있어 사회내부의 모든 가치들과 이해를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Bellamy, 2008/2009). 그러므로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견제력(*contestability*)을 중심으로 공적 숙의의 조건이 구비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숙의민주주의를 보다 체계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곽준혁, 2005).

12) 비지배는 역사적 분석으로부터 추출된 개념이다. 스키너는 1640년부터 1660년까지 영국내란 당시 공화주의를 분석하여 자의적 권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비지배 개념을 수립했다. 스키너는 비지배가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라는 소극적 자유나 '정치적 공동체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적극적 자유와도 다른 '제 3의 자유개념'이라고 주장한다(Skinner, 1998/2007).

숙의민주주의는 정치참여가 정치적 주체들의 목적달성 여부와 상관 없이 이롭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그러나 공화주의자들은 정치참여를 도구적으로 이해한다(Festenstein, 2004, p. 294). 즉, 공화주의자들은 시민들이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치에 참여한다고 상정한다(Held, 2006/2010, p. 79).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현재 향유하는 자유와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의적 지배에 예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참여에 대한 도구적 시각의 중요성은 정치참여의 가치가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즈는 정치참여에 대한 공화주의적 시각이 자신의 이론 체계와 양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Rawls, 1993/1998, p. 253).

정치참여의 도구적 시각은 공동체주의가 주장하는 정치참여의 목적론적 시각과 비교하면 보다 뚜렷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정치참여의 목적론적 시각은 인간이 오로지 정치참여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참여를 좋은 삶에 대한 단일한 가치관으로 인식하는 공동체주의적 시각은 숙의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정치참여를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일생생활의 소극적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지배적 자유와 정치참여에 대한 도구적 시각은 공론장의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정부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대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측면이 강했다.¹³⁾

숙의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은 공적 숙의의 규범적 원리를 담고 있는데, 자유롭고 평등할 때 대화나 토론을 통한 이성의 공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사회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예속 상태에 있는 인간관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공화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나 소극적 자유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규정되기 때문에 비지배는 공적 숙의의 목표이면서, 공적 숙의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13) 2008 촛불집회에 대한 공화주의적 해석은 조희연(2008)을 참조할 것.

공적 숙의의 조건으로서 비지배의 개념이 잘 녹아있는 것은 시민적 덕성의 개념이다. 공화주의자들은 공적 숙의가 오로지 합리성에 의해서만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적 숙의는 시민들이 공동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복무하려는 마음가짐과 자세에도 영향을 받는다. 공화주의에서 시민적 덕성은 확실적인 공적 가치의 내재화나 개인적 욕구를 억제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 비지배의 실천을 강조한다. 즉, 공화주의의 시민적 덕성은 시민사회 내적으로는 상호 존중과 시민사회 외적으로는 자의적 권력에 대한 경계(*vigilance*)를 강조한다(Pettit, 1997, pp. 281~282).

공화주의의 시민적 덕성은 공적 숙의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주장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하버마스가 말하는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와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가 언어행위로부터 도출된 것이라면, 공화주의의 시민적 덕성은 정치적 공동체 내부에서 함양되는 인간의 능력이다. 공화주의적 숙의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적 덕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적 덕성은 시민들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의 열망이나 정서적 동기들이 공적 숙의를 작동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하게 한다. 따라서 시민적 덕성은 숙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정치적 협애화를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3) 공적 숙의의 의사소통 양식

공화주의자들은 숙의민주주의가 다양한 정치적 의사소통의 양식 중에 합리적 대화와 논증을 우위에 놓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상황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Mouffe, 1999; Mouffe, 2000/2006; Pettit, 1997; Chamber, 2009). 나아가 절차적 논증이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점도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중립적이며, 감정적 요소를 제거한 공적 논증 안에서

만 공정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Young, 2000).

공화주의자들은 숙의민주주의의 논증절차를 통해 공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공화주의자들이 공적 숙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적 덕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다. 페티트는 숙의민주주의가 추론의 역설(*the discursive dilemma*)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¹⁴⁾ 숙의 절차가 숙의 결과를 정당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차적 논증 대신 논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여 비지배에 다가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ettit, 2003).

숙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정치참여의 협애화와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rhetoric*)에 관한 논쟁이다. 공화주의자들은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해 레토릭의 필요성을 역설한다(Chamber, 2009; Viroli, 1999/2006). 챔버는 플라톤(Platon)으로부터 이어져오던 숙의와 레토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전통이 현대사회에서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한다. 플라톤이 레토릭을 반대했던 것은 레토릭이 열정으로 하여금 이성을 억제하도록 하기 때문이 아니라, 레토릭이 문답의 형식(*dialogical*)이 아닌 독백의 형식(*monological*)이기 때문이었다. 면대면 대화는 소수 정치 엘리트들 간에 공적 숙의를 촉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디어가 지배하고 여론조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공론장에서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레토릭이 반드시 필요하다(Chamber, 2009). 비롤리는 공화주의의 정치언어는 자유공화국들의 공회당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는데, 바로 이곳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정들이 거둬진 토론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파악한다. 공화주의의 정치언어는 ‘철학적 언어’라기보다는 수사적 언어였으며, 진리를 모색하기보다는 공동선, 즉 공동의 이익을 모색했다(Viroli, 1999/2006).

14) 추론의 역설은 논증상의 공정한 절차가 수립됐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의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즉, 법원에서 배심원들이 피고의 법적 책임을 숙의한다고 할 때, 논증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기모순적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다.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논증에 모두 합의했다 할지라도 배심원들의 최종 판단은 논증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평결을 내린다는 것이다.

레토릭의 필요성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너거스는 1999년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 과정에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레토릭을 구사했다고 지적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그는 숙의민주주의가 정치 엘리트들은 경쟁적이고 모순적인 이익들을 중재하는 협상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Nugus, 2009). 바네스도 경험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참여를 동기화하는 것은 열정과 같은 감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공적 숙의가 긍정적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는 능력(*affective competence*)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Barens, 2008). 레토릭의 부활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좋은 레토릭과 나쁜 레토릭을 구분한다. 비롤리는 레토릭을 설득의 기술이라고 말하고(Viroli, 1999/2006), 챔버는 레토릭을 선동정치(*demagogue*)와 구분하여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연설을 좋은 레토릭의 예로 삼는다(Chamber, 2009).

그러나 레토릭에 대해서는 공화주의자들 간에도 이견이 존재한다. 레토릭에 반대하는 입장은 개인들 간에 레토릭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적 숙의가 공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Sunstein, 2003). 드라이젝은 레토릭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다. 레토릭이 공감함을 이끌어내고, 국가와 공론장의 간극 또는 시민들 간의 입장 차이를 가로지르는 데 유효한 의사소통 양식이지만, 레토릭이 갖는 한계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레토릭이 수용자들의 공감함을 조작하는 억압적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숙의민주주의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비억압성’과 ‘특수한 입장이 일반화된 입장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Dryzek, 2000, p. 167).

공화주의적 견해는 공적 숙의가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순수하게 이기적인 선호들을 추려내고, 시민들의 상이한 거대 집단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규범적 확신을 반영하는 합의된 의제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최후의 결정 절차가 다루어야 하는 일련의 순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 숙의의 마지막 결정 절차에서도 합리적 대화나 논증과 같은 의사소통적 절차가 아니라 경쟁적이고 모

순적인 이해관계를 중재하고자 하는 협상, 타협 등이 중요하다. 즉, 완벽한 합의에 도달할 수는 없더라도 이익의 균형을 모색하는 협상이나 타협은 이기적 협상과 윤리적 보편주의 간의 중간 지점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Bellamy, 2008/2009).

숙의민주주의는 비당파적인 공적 숙의를 이상적 모델로 삼지만, 현실 정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보다 폭넓은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세력들 간의 경쟁 공간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적 레토릭은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공론장에서 동원되는 일상적 의사소통의 양식이다. 다만 사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주장들이 여과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이 창출되어야 한다.

공화주의에서 여론과 제도화된 공적 숙의의 조화는 어떤 형태로 모색될 수 있는가? 공화주의는 숙의민주주의보다 공적 숙의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합리적 대화와 논증 외에 레토릭을 비롯한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도 정치참여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공론장은 숙의민주주의에서보다 훨씬 더 경쟁적이며 경합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제도화된 공적 숙의 절차 또한 공적 숙의 과정에 맡겨진다. 롤즈처럼 정치적 대표들의 숙의에 위임할 것인지, 하버마스처럼 공론장 내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등 절차를 수립하는 것도 숙의의 몫이다. 만약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경우에는 정치적 대표, 정당,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다. 이들은 법안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소수의 배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수립 가능한 타협책을 모색해야 한다.

숙의민주주의가 공동선에 기초한 공공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제시해야 하는 ‘저자’ 민주주의의 관점을 견지한다면, 공화주의는 시민들이 통치자들에게 공공규범과 기준을 선포하게 만드는 ‘편집자’ 민주주의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Bellamy, 2008/2009). 편집자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통치자들이 자신들에게 위임된 권한을 책임성 있게 행사하도록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통치자들이 자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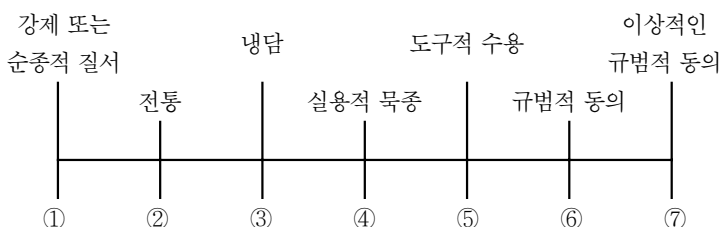
하버마스와 롤즈가 각각 투입중심의 민주주의와 산출중심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파악한다면, 공화주의도 하버마스처럼 투입중심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공화주의는 숙의민주주의에 비해 공정한 합의의 산출보다는 평등하고 실질적인 정치참여에 치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4) 민주적 의사결정의 정당화 수준

공적 숙의에 대한 숙의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 차이는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정당화 수준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로 제시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이한 근거에 따라 명령에 복종하고 규칙에 따르거나 동의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규칙과 법률이 정당하고 존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따를 때만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당성 있는 정치질서는 주민들이 규범적으로 재가한 질서를 의미한다. <그림 1>에서는 ⑥과 ⑦만이 정당성을 획득한 정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⑤는 불충분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체제의 수용이 도구적인 한, 현재의 상태는 단지 원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묵인되거나 추종될 뿐이기 때문이다(Held, 2006/2010, pp. 375~376).

숙의민주주의는 이상적인 규범적 동의에 기반한 정치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상적인 규범적 동의는 비배제성과 비강제성을 갖는 토론과 논증의 형식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는 학자는 무페(Mouffe)이다. 무페는 윤리나 정치적 원칙들은 상이하고 갈등적인 해석을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는 ‘갈등적 합의’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성취된 합의는 합리적 합의가 아니라 잠정적이며, 헤게모니의 임시적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Mouffe, 2000/2006, p. 160). 무페는 현실의 갈등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숙의민주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정당화 수준은 이상적인 규범적 동의에 이르지 못하고, 도구적 수용의 단계에 머물고 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페의

〈그림 1〉 정치체제를 수용하는 이유나 근거



출처: Held (2006/2010, p. 375)

숙의민주주의 비판은 초점을 벗어나 있다. 무폐의 문제는 공론장 내부에서 시민들 간의 상호이해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모든 행위자들의 성공 지향적 행위만을 고려한다는 점이다(정병화, 2007).

공화주의는 합리적 대화나 논증을 통해 이상적인 규범적 동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공화주의가 공적 숙의를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세력 혹은 집단들 간의 균형이다. 이 과정에서 공적 숙의의 참여자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동의의 내용은 ‘비지배’라는 형태로 이미 주어져 있다. 비지배가 시민들 간의 합리적 대화와 논증이라는 상호이해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인 규범적 동의’라고 말할 수 없다. 공화주의는 현실의 민주주의에서 공적 숙의를 통한 이상적인 규범적 동의에 이를 수 없을지라도 시민들이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공적 숙의 과정에 참여하면 비지배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공화주의의 비지배는 정치철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다. 비지배는 역사 속에서 자의적 권력에 의해 인민들이 자유를 잃고 도탄에 빠졌을 때 당대의 지식인들과 실천가들이 내걸었던 공통된 주장으로부터 나왔다. 공화주의자들은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나 영국내란기(Civil War)의 저작들을 바탕으로 시대적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소극적 자유나 적극적 자유와도 다른 자의적 권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비지배적 자유 개념이 존재했다고 파악했다.¹⁵⁾

15) 기존의 정치사상사에 대한 접근은 자유·권리·국가 등 추상적이고 보편적 관념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 주된 접근법이었다. 그러나 스키너는 어떤 역사적 문헌이나 저술은 결코 정치나 사회에 대한 탈시간적 의문과 이에 대한 대답으로 기술되

4. 결론

언론학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주의 이론의 숙의적 전환이 지니는 중요한 가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사고하게 했다는 것이다. 숙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사소통적 질서의 창출과 제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언론학이 숙의민주주의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 계기는 이론체계가 지니는 본질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른 새로운 정치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현실적 동기가 강했다. 그간 언론학에서는 숙의민주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 다양한 차원의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에서 공적 숙의를 합리적 대화와 논증으로 규정할 경우 규범적인 이상 상태와 현실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화주의는 공적 숙의를 다른 각도에서 조망하고, 숙의민주주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데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론이다.

공화주의의 숙의민주주의 비판은 기존의 비판들과 유사성이 있지만,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양립 가능한 수준에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하고 있다.¹⁶⁾ 공적 숙의를 통해서만 민주적 의사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화주의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공화주의의 중요한 주장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변호되는 공적 숙의의 제도들과 정책들이 증진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민적 덕성과 실천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Kymlicka, 2002/2005, p. 400 참조).

공화주의가 제시하는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화주의는 숙의민주주의가 목표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한다. 공화주의는 비지배가 숙의민주주의의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관념이나 사상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그 시대의 반응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조승래, 2010, 43쪽). 스킨너의 대표적 연구 성과물은 (Skinner, 1978/2004; Skinner, 1998/2007)이다.

- 16)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오현철(2006)을 참조할 것. 공화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유주의자, 공동체주의자, 비판 이론가, 여성주의자, 다문화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공통된 비판은 보다 확장된 숙의의 필요성이다.

숙의민주주의가 공동선에 대한 일치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공화주의는 숙의민주주의가 권력의 불평등에서 오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비지배는 공적 숙의의 목표인 동시에 공적 숙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셋째, 공화주의는 숙의민주주의가 정치참여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할 것은 요구한다. 숙의민주주의는 왜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공화주의의 정치참여에 대한 도구적 시각은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넷째, 공화주의는 공론장을 보다 논쟁적이며, 경험적 질서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공화주의는 합리적 대화와 논증 외에 레토릭을 비롯한 다양한 의사소통의 양식이 공적 숙의를 진행하는 데 작용할 수 작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며, 합의보다는 갈등 당사자의 이익 균형을 모색하는 협상이나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여론형성과 제도화된 공적 숙의의 조화는 비당파성을 전제로 한 합의를 산출하는 과정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 혹은 지역 공동체 등과 같은 거대 집단들로 하여금 합의된 의제를 만들고, 제도화된 공적 숙의의 기구들이 타협이나 조정 등을 통해 최종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공적 숙의가 공동선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숙의민주주의가 의사소통을 제약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면, 공화주의는 시민들이 자의적 권력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적 덕성에 의존한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공화주의자들의 제언은 공적 숙의 과정을 전적으로 개인의 합리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갈등 표출이 수반되더라도 자율적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적 덕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공화주의는 분명히 숙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던 정치참여의 협소화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화주의는 공적 숙의의 절차까지도 숙의의 대상으로 삼고, 레토릭 등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공적 숙의의 범위를 확

〈표 2〉 공화주의를 통한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보완

구분	내용
공적 숙의의 주체	일반 시민: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가정되지 않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예측 상태에 놓인 개인
공적 숙의의 목표	비지배: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자유
정치참여에 대한 동기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공적 숙의의 조건	비지배: 시민적 덕성 함양
공적 숙의의 주체	제한 사항 없음. 공적 숙의의 절차도 숙의의 주체
공적 숙의의 의사소통 양식	합의를 추구하는 대화나 논증이 아닌 경쟁을 중시하는 논쟁, 협상과 타협 등 이해관계의 조정
여론형성과 제도화된 공적 숙의의 조화	집단 내부에서 합의된 의제 형성, 조정과 타협을 통한 최종 결정

장시킨다. 공화주의가 공적 숙의의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정치적 불신과 냉담에 휩싸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숙의민주주의 이론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현실은 암담하다. 당파성을 띤 매스미디어들이 공론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론장도 댓글을 읽기가 두려울 정도로 비난이나 욕설로 넘쳐난다. 제도화된 공적 숙의를 담당하는 국회도 합리적 대화나 논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현실 정치가 양보 없는 갈등상황에 봉착한 듯 보이지만, 거시적으로 숙의민주주의의 진전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저항한 여론의 방향성에 의해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된 사례가 그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과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은 모두 다수 여론과 일치하는 방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은 정치권력의 핵심적 이해가 걸린 사건에서 헌재가 집권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주성수, 2005). 진보와 보수로 첨예하게 나뉜 정치적 갈등 구조 속에서도 숙의민주주의의 진전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끝으로 공화주의가 제기한 비판과 대안 모색이 과연 숙의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글을 맺고자 한다. 숙의민주주의는 현재 단일한 이론체계라기보다는 광범위한 이론적 스펙트럼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롤즈는 고전적 공화주의의 주장들이 자신의 이론과 양립가능하다고 피력했으며(Rawls, 1993/1997, p. 255), 하버마스도 숙의민주주의 이론체계 수립과정에서 공화주의의 이론적 주장들을 참조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Habermas, 1992/1999).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만 숙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숙의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분명히 다른 입장에 서 있지만, 숙의민주주의의 출발점을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참여에서 찾는 공화주의의 주장은 하버마스와 롤즈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의 고전적 유산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이론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민주주의 이론으로서 공화주의의 체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숙의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이론적 대화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준혁 (2009). 공화주의와 인권. 《정치사상연구》 15 (1), 31~53쪽.
- (2005). 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 《국가전략》 11 (2), 141~168쪽.
- 김만권 (2001).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 입문》 동명사.
- 김명식 (2004).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민주주의. 《철학연구》 65, 260~280쪽.
- 김미영 (2006). 《현대공동체주의: 매킨타이어, 왈저, 바버》 한국학술정보.
- 김비환 (2004).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은미·이준웅 (2006).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 토론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효과. 《한국언론학보》 50 (4), 65~95쪽.
- 김종길 (2005). 사이버공론장의 분화와 숙의민주주의의 조건. 《한국사회학》 39 (2), 34~68쪽.
- 김현석·이준웅 (2007). 인터넷 정치 토론의 담론적 특성. 《한국언론학보》 51 (4), 356~384쪽.
- 양해림 (2008).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의 이념은 부활할 수 있는가: 공화주의의 정치 철학적 고찰. 《시대와 철학》 19 (1), 7~46쪽.
- 오현철 (2006). 토의민주주의: 이론 및 과제. 주성수·정상호 (편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아르케.
- 유홍림 (1994). 칸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의 규범론의 의의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28 (2), 463~490쪽.
- 윤영철 (2000).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숙의 민주주의: 총선 연대 사이트의 게시판 분석. 《한국방송학보》 14 (2), 109~150쪽.
- 이동훈 (2009). 숙의적 공론장으로서 블로그 공간의 의사소통적 관용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 (4), 27~49쪽.
- 장동진·송경호 (2006). 심의민주주의의 주체에 대하여: 대표자, 위원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차이의 인정과 도덕적 보편주의: 하버마스의 '담론적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논집》 37 (2), 45~59쪽.
- 정규호 (2005).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논리의 특성과 함의. 《시민사회와 NGO》 3 (1), 29~54쪽.
- 정병화 (2007).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에 대한 양가성 고찰: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상호이해 영역 구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 (2), 175~211쪽.

- 주승래 (2010). 《공화국을 위하여》 도서출판 길.
- 조희연 (2008). 촛불시위, 제도정치와 직접행동정치. 권지희 (외). 《촛불이 민주주의다》 해피스토리.
- 주성수 (2005). 국가의 정책결정에 국민여론이 저항하면?: 심의민주주의의 참여제도의 탐색. 《한국정치학회보》 39 (3). 147~165쪽.
- 홍성구 (2002). 자율적 정치참여를 위한 의사소통의 조건: 롤즈와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9, 295~327쪽.
- Bellamy, R. (2008). 공화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주의. 광준혁 · 조계원 · 홍승현 (역) (2009).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까치.
- Chamber, S. (2009). Rhetoric and the public sphere: Has deliberative democracy abandoned mass democracy? *Political Theory* 37 (3), 323~350.
- Cohen, J. (1989). 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In A. Hamlin, & P. Pettit (Eds), *The good polity: Normative analysis of the stat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Dagger, R. (2008). 공화주의적 처벌: 결과주의자인가 응보주의자인가?. 광준혁 · 조계원 · 홍승현 (역) (2009).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까치.
- Dryzek, J. S.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New York : Oxford Univ. Press.
- Gutmann, A. & D. Thompson (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Habermas, J. (1992).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한상진 · 박영도 (역) (2007).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나남.
- Held, D. (2006). *Models of democracy* (3rd ed). 박찬표 (역) (2010).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 Kymlicka, W.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장동진 외 (역) (2005).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 Laborde, C. & Maynor, J. (2008). 현대 정치이론에 대한 공화주의의 기여. 광준혁 · 조계원 · 홍승현 (역) (2009).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까치.
- Mouffe, C. (1999). Deliberative democracy or agonistic pluralism, *Social Research* 66, 745~758
- _____. (2000). *The democratic paradox*. 이행 (역) (2006).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 Nugus, P. (2009). Rhetorical strategies of political parties and organized movements: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Australian monarchy -

- republican debate. *Journal of Sociology* 45 (3), 307~328.
- Pettit, P. (1997).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New York: Oxford Univ. Press.
- _____. (2003). Deliberative democracy, the discursive dilemma, and republican theory. In J. Fishkin & P. Laslett. (Eds).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 (pp.139~162).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_____. ·곽준혁 (2009). 공화주의와 한국 사회: 필립 페티트 교수와의 대담. 《아세아 연구》 52 (1), 103~141.
- Rawls, J. (1972).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역) (1990). 《사회정의론》 서광사.
- _____. (1993). *Political liberalism*. 장동진 (역) (1998).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 _____. (1999). *The law of peoples*. 장동진 외 (역) (2000). 《만민법》 이끌리오.
- Reese-Schäfer, W. (1991). Jürgen Habermas. 선우현 (역) (1998). 《하버마스: 철학과 사회이론》 거름.
- Rostbøll, C. F. (2008). Emancipation or accommodation?: Habermasian vs. Rawlsian deliberative democracy.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34 (7). 707~736.
- Skinner, Q. (1978).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박동천 (역) (2004).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1》 한길사.
- _____. (1998). *Liberty before liberalism*. 조승래 (역) (2007). 《퀸틴 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코기타툼.
- Sunstein, C. R. (2003). The Law of group polarization theory. In J. Fishkin & P. Laslett. (Eds).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 (pp. 80~101).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Viroli, M. (1999). *Repubblicanesimo*. 김경희 · 김동규 (역) (2006). 《공화주의》 인간사랑.
- Young, I. M.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 Press.

Theoretical complement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With focus on republican-oriented alternative

Seong-Ku HONG

Deliberative democracy is a theoretical system in which democratic decision making can be justified only by public deliberation participated in by liberal and equal citizens. To practice genuine deliberative democracy, the current brand of deliberative democracy has to settle certain tasks largely pertaining to two aspects. First, it needs to suggest an appropriate answer for the external criticism against the limita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rein. Second, it must establish harmony between its two different directions of “expansion of equal 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induction of fair agreement.” This study aims to search first for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in the deliberative-democracy system based on Habermas and Rawls, and then to examine classical republicanism as a possible alternative.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suggests the elements of classical republicanism that can possibly complement deliberative democracy, and explains how deliberative democracy can be realized by accomplishing the two aforementioned tasks.

- 1) 최초 투고: 2011. 1. 5.
- 2) 최종 수정본 입고: 2011. 5. 15.
- 3) 최종 게재 결정: 2011. 5. 21.
- 4) 참고문헌 수: 47개